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군인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국방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군인이 개인 귀책사유로 보직해임된 경우 직위해제된 공무원과 동일한 비율로 봉급감액의 불이익을 부여하도록 군인사법이 개정('23. 10. 31.)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하고, 「부처 인사자율성 제고 종합계획('22년)」에 의거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임기제 진급대상 직위에 대한 협의가 불필요함에 따라 협의절차를 삭제하기 위함임.

3. 주요내용

가. 법 제17조의2제1항제3호의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안 제17조의2제3항)

1. 법 제56조의2제1항 각 호의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4.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나. 군인이 보직해임 될 경우 봉급이 감액되도록 조항을 신설함(안 제17조의2제2항)

-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 : 봉급의 80퍼센트
 - 2)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의결이 요구 중이거나,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군검찰·군사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 : 봉급의 50퍼센트, 단 보직해임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보직을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30퍼센트를 지급
- 다.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22년)」에 따라 임기제 진급대상 직위에 대한 협의절차를 삭제함.(안 제25조의2제1항제2호)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되었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2024. 2. ~ 2024. 3.) 진행 중
- 3) 부패영향평가 등 요청 : 관계기관과 협의 중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17조제1항제3호”를 “법 제17조의2제1항 단서 각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보직해임된 사람은 다음 각호에 구분에 의거 봉급의 일부를 지급한다.

1. 법 제17조의2제1항제1호 : 봉급의 80퍼센트
2. 법 제17조의2제1항제2호·제3호 : 봉급의 50퍼센트, 단 보직해임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보직을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30퍼센트를 지급
3. 단, 보직해임이 무효·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원래의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한 당시의 봉급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③ 법 제17조의2제1항제3호에서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법 제56조의2제1항 각 호의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4.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제1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7조제2항”을 “법 제17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17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7조제3항”을 “법 제17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25조의2제1항제2호 중 “기획재정부장관 및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을 “정하는”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단, 제17조의2제2항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의2(보직해임된 사람에 대한 조치) <u>법 제17조제1항제3호</u> 에 따라 임기가 끝나기 전에 보직에서 해임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서 3개월이 지나도 보직되지 못하거나 2회 이상 보직해임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49조에 따른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고, 그 조사 결과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보직하여야 한다.	제17조의2(보직해임된 사람에 대한 조치) ① <u>법 제17조의2제1항 단서 각호</u> ----- ----- ----- ----- ----- ----- ----- ----- ----- -----.
<u><신 설></u>	② <u>법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보직해임된 사람은 다음 각호에 구분에 의거 봉급의 일부를 지급한다.</u> 1. <u>법 제17조의2제1항제1호 : 봉급의 80퍼센트</u> 2. <u>법 제17조의2제1항제2호 · 제3호 : 봉급의 50퍼센트, 단 보직해임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보직을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u>

<신 설>

제17조의3(보직해임 심의위원회
의 구성 등) ① 법 제17조제2항

기간 중에는 봉급의 30퍼센트
를 지급

3. 단, 보직해임이 무효·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원래의 정기승
급일을 기준으로 한 당시의
봉급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
하여 지급한다.

③ 법 제17조의2제1항제3호에
서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란 다
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법 제56조의2제1항 각 호의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별법」 제2조에 따 른 성
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
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 른
금지행위

4.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제17조의3(보직해임 심의위원회
의 구성 등) ① 법 제17조의2제

에 따른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는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의 소속별
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 또는 부대에 설치한다.

1. ~ 5. (생략)

② ~ ⑤ (생략)

제17조의4(보직해임 심의위원회
의결 전 보직해임의 사유) 법
제1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3. (생략)

제25조의2(임기제 진급 대상 직위
등)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서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거
나 전문인력이 필요한 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직위를 말한다.

1. (생략)

2. 그 밖에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문인력이 필요
한 분야로서 임기제 진급 대
상 직위로 정해야 할 불가피
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2항-----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7조의4(보직해임 심의위원회
의결 전 보직해임의 사유) 법
제17조의2제3항 -----

1. ~ 3. (현행과 같음)

제25조의2(임기제 진급 대상 직위
등) ① -----

1. (현행과 같음)

2. -----

국방부장관이 <u>기획재정부장관</u> <u>및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u> <u>정하는</u> 직위 ② ~ ⑧ (생 략)	----- <u>정하는</u> ----- ----- ----- ② ~ ⑧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연 락 처	(02) 748 - 5121